**콘텐츠 유통 표준계약서**

**“저작권자”주식회사\_\_\_\_\_\_\_\_\_\_\_\_**

**“사업자”주식회사 마이플**

**콘텐츠 유통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저작권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마이플(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콘텐츠’ :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적법한 권리를 소유한 모든 데이터 (음원,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앨범재킷, 사진, 영상물 등) 및 그 대상 저작물과,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자”가 보유한 저작물로 ‘제휴콘텐츠’로 표시하여 서비스한다.

2. ‘서비스’ : “사업자”가 ‘콘텐츠’ 기반 사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써 구체적 내용을 의미한다.

3. ‘시스템’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4. ‘이용자’ :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5. ‘이용료’ :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에서의 ‘콘텐츠’ 1회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일정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그 기간의 시청을 1회 이용으로 보되, “사업자”는 1회 이용으로 보는 일정 기간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매출액’ : ‘이용료’의 총 합계로 환불/취소를 제외한 액수로 한다.

7. ‘정산’ : ‘매출액’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과 방식으로 대금을 나누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8. ‘정산시스템’ : “사업자”가 원활한 ‘정산’과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이용량 및 매출정보 등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의미한다.

9. ‘미제휴콘텐츠’: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콘텐츠’가 정상 과금이 되지 않은 콘텐츠

10. ‘본 계약’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범위: https://www.filesun.com , https://m.filesun.com

서비스형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제 4 조 (정산시스템 연동 및 영상 필터링 도입)**

1.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본 계약 체결 즉시 “저작권자”와 “사업자”의 ‘정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판매내역을 반드시 노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파일로 출력 가능하도록 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정산시스템’에는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제휴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스템’의 장애에 의해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정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애의 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 책임자 등을 발생 즉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운영)**

1. “사업자”는 ‘서비스’에 대해서 주문처리, 정산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등록증 미제출시 “저작권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책정하여 “저작권자”와 공정하고 균등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저작권자”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 및 2항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은 통보의 예외로 한다.

**제 7 조 (수익배분 및 정산, 지급)**

1. ‘사업자’는 ‘시스템’의 ‘매출액’에서 50%(부가세별도)를 ‘저작권사’의 수익배분 금으로 매월 정산하여 ‘저작권사’에게 지급한다(결제수수료 포함).

2. ‘저작권사’는 ‘사업자’가 등록한 정산 자료에 대한 검수 작업을 완료한 후 서비스 익월 10일자로 해당 정산금액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청구하고, ‘사업자’는 ‘저작권사’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월의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한다.

3. 본 조 1항과 관련하여 ‘저작권사’는 ‘사업자’에게 ‘정산시스템’의 데이터 및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저작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자’는 ‘콘텐츠’의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TV, 잡지 등을 포함한 모든 방송, 광고, 인쇄매체 등에 광고, 홍보, 선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귀속된다.

**제 9 조 (정보 제공 및 고지의 의무)**

1.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등록증 사본을 ‘저작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시스템’에서의 ‘콘텐츠’의 ‘서비스’ 현황 관리 및 정산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관리자 계정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콘텐츠’의 판매 실적 및 ‘저작권자’의 수익에 대해 ‘저작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정산시스템 계정(PC와 모바일 정산내역 구분 제공)

4.‘저작권자’가 ‘콘텐츠’를 ‘사업자’의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업로드 계정(각 3개 이상)

5. ‘사업자’의 ‘시스템’에 업로드 된 ‘저작권자’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가 직접 과금 및 삭제, 차단 할 수 있는 계정(각 1개)

6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무실, 담당자 주소/연락처 및 관리자 계정의 변경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기 및 수시 통지)**

1. 통지 형식 및 내용

가. ‘미제휴콘텐츠’ (“저작물” 게시 시기, 침해 “저작물” 제호 및 요청된 검색어, URL, 침해 서비스 범주, “삭제” 시기 등)

나. 유통 현황 등 관련 정보 및 매출 현황, 수익 배분 등 정산 정보

2. “사업자”는 “미제휴저작물” 적발 및 “삭제” 내역과 유통 관련 정보의 통지는 1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산 정보를 매월 1회 통지한다.

3. “저작권사”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저작권보호)**

1.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24시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적용 중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변동(기술업체 변경, 시스템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저작권자’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시점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무 양도의 통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시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13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변경 요청 및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라도 수익배분 등 제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에서 의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정산시스템 연동을 불이행하는 경우 “침해된 게시물 수 x 콘텐츠 가격" 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책정하며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요청 즉시 지급한다.

**제 15조 (계약의 해지)**

1.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지급불능,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 ‘사업자’가 ‘기술적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비밀유지)**

1.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및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구히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 해서는 안되며, 기타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사법 절차,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업무상 비밀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 17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와 ‘사업자’의 상호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는 협력자의 지위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며 ‘본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르며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를 준용한다.

3.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본 계약서를 2부씩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저작권자**

‘저작권자’명:

‘주소’:

대표이사 (인)

**사 업 자**

주식회사 마이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4, 501호

대표이사 김 창 섭 (인)